

<별표>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직원정원표

(삭제)

- 별정직
 - 비서(7급상당) 1
 - 속기사(7급상당) 1
 - 속기사(8급상당) 2
 - 속기사(9급상당) 1
 - 비서(9급상당) 1
- 별정직 또는 일반직
 -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2
- 일반직
 - 지방서기관 1
 - 지방행정주사 3
 - 지방행정주사보 3
 - 지방행정서기 3
 - 지방행정서기보 2
- 기능직
 - 8등급 지방기계원 또는 지방 전기원 2
 - 9등급 지방사무보조원(필기)-표결사 1
 - 9등급 지방사무보조원(타자) 1
 - 10등급 지방사무보조원(타자) 1
 - 9등급 지방방호원(방호) 1
 - 10등급 지방방호원(방호) 1
 - 10등급 지방운전원 2

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(안)
 심 사 보 고 서

1995. 3. 2.
 총무재무 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5년 2월 17일 마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1995년 2월 18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7회의회(임시회) 제2차 위원회(95. 3. 2.)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이 춘 기

- 가. 제출이유
 지방자치법 제102조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인 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

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”이 1994. 12. 31에 공포되어, 1995. 1.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에 두는 실·국 및 과 등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3실 5국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2조)
 - 문화공보실, 감사실, 시민봉사실, 총무국, 재무국, 시민국, 도시정비국, 건설국
- 3실(문화공보실, 감사실, 시민봉사실) 설치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3조 내지 제5조)
- 5국(총무국, 재무국, 시민국, 도시정비국, 건설국)소속 24개과의 설치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 내지 제10조)

○ 계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
규칙으로 위임함(안 제11조)

3. 전문위원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박관수)

- 종전에는 행정기구를 설치함에 있어 시·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94. 3.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'95. 1. 1부로 시행됨에 따라 그 범위안에서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그 주요내용을 보면 3실 5국 24개과와 그 분장사무는 종전규칙과 별 차이점이 없으나 재무국소속 세무1·2과를 부과과와 세무관리과로 분리하여 세금의 부과와 징수업무를 각각 분리시켰으며,
- 재무국소속 토지관리과와 도시정비국소속 지적과를 통·폐합하여 재무국소속의 지적과로 분리하고,
- 도시정비국소속 지역교통과를 업무성질별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리시켰습니다.
- 이상과 같이 업무의 기능이나 행정능률 또는 통솔범위를 고려한 교의 분할이나 통·폐합등은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하였다고 사료되나 추후에는 전문기관등을 통한 행정업무진단등을 실시하여 과별 업무량측정은 물론 행정능률이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기구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동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의 기구조정 승인을 얻어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질의(김문태 간사) : 감사실의 환경순찰 업무와 환경과업무의 차이는?

○ 답변(이춘기 총무과장) : 환경과는 대기 및 수질오염등 공해발생관련업무를 대상으로 하는데 감사실의 순찰은 구의 전반적인 외형적순찰을 대상으로 순찰함.

○ 질의(황태식 위원) : 지하수계의 신설이유는?

○ 답변(이춘기 총무과장) : 하수과징계의 주업무가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되었고 지하수개발에 따른 추진업무가 발생되므로 명칭변경.

○ 질의(김유현 위원장) :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, 산업과와 환경과의 통폐합 검토 및 청소업무의 민영화 검토의사는?

○ 답변(이춘기 총무과장) : 향후 연구검토 사항임.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(안)

의안 번호	378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1995. 2. 17.

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1. 제정이유

지방자치법 제102조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인 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”이 1994. 12. 31에 공포되어, 1995. 1.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에 두는 실·국 및 과등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○ 3실 5국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2조)

- 문화공보실, 감사실, 시민봉사실, 총무

국, 재무국, 시민국, 도시정비국, 건설국

- 3실(문화공보실, 감사실, 시민봉사실) 설치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함.(안 제3조 내지 제5조)
- 5국(총무국, 재무국, 시민국, 도시정비국, 건설국) 소속 24개과의 설치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함.(안 제6조 내지 제10조)
- 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칙으로 위임함.(안 제11조)

3. 제정근거

- 지방자치법(1994. 12. 20. 법률 제4789호) 제15조, 제102조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(1994. 12. 31. 대통령령 제14480호) 제10조

4. 조례(안) : 별첨

5. 예산조치 필요성 : 불필요

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(이하 "마포구"라 한다)에 두는 실·국 및 과 등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실·국의 설치) 마포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문화공보실·감사실·시민봉사실·총무국·재무국·시민국·도시정비국 및 건설국을 둔다.

제3조(문화공보실) 문화공보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
2. 공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
3. 문화·예술에 관한 사항
4. 관광 및 문화재에 관한 사항

제4조(감사실) 감사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
2. 감사·진정 및 비위사건의 조사·처리
3.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

제5조(시민봉사실) 시민봉사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문서·관인·민원상담 및 민원안내에 관한 사항
2.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처리·장표 및 자료의 보관과 열람에 관한 사항
3. 재증명의 발급·진정의 접수처리·호적에 관한 사항
4. 구·동 민원업무의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

제6조(총무국) ① 총무국에 총무과·기획예산과·국민운동지원과·생활체육과 및 민방위과를 둔다.

② 총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인사·조직·보안에 관한 사항
2. 선거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
3. 지방의회·동행정에 관한 사항
4. 기타 청내 다른 실·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

③ 기획예산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구정의 기획·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
2. 예산의 편성·배정·예산의 교부에 관한 사항
3. 예산의 투자심사 및 재정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

- 4. 법제심사 및 소송에 관한 사항
- 5. 전산 및 통계에 관한 사항

④ 국민운동지원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
- 2. 새마을관련조직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3.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- 4. 바르게살기운동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- 5. 바르게살기협의회 조직·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⑤ 생활체육과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생활체육·전전생활진흥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- 2. 생활체육·전전생활관련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- 3. 체육시설업 신고·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

⑥ 민방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민방위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- 2. 전시운영계획·민방위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- 3. 민방위대 설치·조직편성·동원에 관한 사항
- 4.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
- 5. 도시방재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
- 6. 병사에 관한 사항

제7조(재무국) ① 재무국에 재무과·세무관리과·부과과 및 지적과를 둔다.

② 재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국·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
- 2. 공사의 도급·물품의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
- 3. 지출 및 세입·세출의 총괄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4. 회계검사·공채·직원저축에 관한 사항
- 5.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

③ 세무관리과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구세입의 총괄(일반회계·특별회계 포함)
- 2. 취득세·등록세의 징수에 관한 사항
- 3. 재산세·종합토지세·농지세 징수에 관한 사항
- 4. 목적세의 징수에 관한 사항
- 5. 자동차관련 각종 세의 징수에 관한 사항
- 6. 사업소세·도축세·마권세 및 면허세의 징수에 관한 사항
- 7. 구세관련 법규에 관한 사항

④ 부과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취득세·등록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
- 2. 재산세·종합토지세·농지세 부과에 관한 사항
- 3. 목적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
- 4. 자동차관련 각종 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
- 5. 사업소세·도축세·마권세 및 면허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
- 6. 토지등급설정·수정 및 과세표준액 조정에 관한 사항
- 7. 기타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

⑤ 지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지적업무의 기획 및 조정총괄
2. 지적전산·지적측량에 관한 사항
3. 토지 이용정리에 관한 사항
4. 택지소유상한규제 및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사항
5. 지가조사에 관한 사항
6. 토지거래허가·신고에 관한 사항
7. 부동산중개업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

제8조(시민국) ① 시민국에 사회복지과·가정복지과·위생과·산업과·환경과 및 청소과를 둔다.

② 사회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구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
2. 직업안정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
3.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
4.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

③ 가정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가정복지·여성복지·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
2. 노인복지·유아교육·가정의례에 관한 사항
3. 보호여성 선도 및 모자복지에 관한 사항
4. 소관 법인의 시설 인·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
5. 근로청소년복지·요보호아동예방 및 불우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

④ 위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식품위생업소(제조업소는 제외)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
2.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제조업소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

3. 숙박업·목욕장업·이미용업·유기장업 및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

4. 위생업소 위반사항 감시단속에 관한 사항

⑤ 산업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시장의 지도·공장등록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2. 물가조사·지도단속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
3. 중소기업육성 및 공산품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
4. 연료(가스류포함)판매업소 허가(신고)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
5.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사항
6. 가스안전관리업무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
7. 가스시공업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
8. 농업·수산업 및 축산업에 관한 사항

⑥ 환경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대기오염·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
2. 소음·진동·악취 및 기타 환경공해방지에 관한 사항
3.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
4.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
5. 자동차 공해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

⑦ 청소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일반폐기물 수집 및 운반에 관한 사항

- 2.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3.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
- 4. 환경미화원에 관한 사항
- 5. 공중변소의 설치·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- 6. 청소대행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

제9조(도시정비국) ① 도시정비국에 주택과·도시정비과·교통행정과·교통지도과 및 건축과를 둔다.

② 주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주택행정의 종합 및 주택통계에 관한 사항
- 2. 시영주택의 관리·주택개량·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
- 3. 주택건설업자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
- 4. 무허가 건물의 발생방지·위험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
- 5.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

③ 도시정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도시계획·도시개발·도심재개발에 관한 사항
- 2. 도시계획법에 의한 각종 인·허가(개발제한 구역은 제외)에 관한 사항
- 3. 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경관개선에 관한 사항

④ 교통행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지역교통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
- 2. 자동차 동원 및 특별수송대책에 관한 사항
- 3. 자동차 운수사업의 인·허가에 관한 사항

- 4. 자동차정비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
- 5.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

⑤ 교통지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자동차 운수사업의 인·허가사항과 관련된 법규위반 단속에 관한 사항
- 2. 주·정차 위반 단속에 관한 사항
- 3. 주차장 설치허가 및 관리 지도등에 관한 사항
- 4. 불법 주·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
- 5. 주차장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

⑥ 건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건축행정의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에 관한 사항
- 2. 건축허가·착공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
- 3. 위법건물에 관한 사항의 총괄
- 4. 건축업자 지도감독
- 5. 영선업무에 관한 사항

제10조(건설국) ① 건설국에 건설관리과·토목과·하수과 및 공원녹지과를 둔다.

② 건설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도로·지하도·하천·구거 기타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
- 2. 점용료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
- 3. 토지의 사용·수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
- 4. 환경순찰의 확인 및 가로장애물 제거에 관한 사항
- 5. 건설기계 및 운행제한 단속에 관한 사항
- 6.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
③ 토목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도로 및 토목공사의 계획수립 및 집행
2. 도로 및 보도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3.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의 관리
4. 지하도·지하광장·터널 및 그 부속물의 유지관리

④ 하수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하수행정의 종합조정
2. 하수도·하천 및 우수지의 건설·유지관리
3.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
4. 배수펌프장 및 배기시설의 관리
5. 하수도사용료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
6.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

⑤ 공원녹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공원·녹지관리의 총괄
2.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
3. 도시공원조성 및 시설유지관리
4. 공원녹지대조성 및 시설유지관리
5. 개발제한구역 관리 총괄

제11조(계의 설치 및 사무분장) ① 실·과 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.

②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(안)

심 사 보 고 서

1995. 3. 2.
총무재무 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5년 2월 20일 마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1995년 2월 21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7회의회(임시회) 제2차위원회(95. 3. 2.)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이 춘 기.

가. 제출이유

지방자치법 제103조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인 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”이 1994. 12. 31에 공포되어 1995. 1.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규칙으로 되어 있던 정원규정을 구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본 조례로 규정하고,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키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서울특별시마포구 본청, 직속기관 및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2조)
 - 구 본청 : 905명
 - 직속기관(보건소) : 71명
 - 동 : 487명
- 서울특별시마포구 본청, 직속기관 및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위임함.(안 제3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박관수)

-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의 종전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정원은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이 '94. 3. 16자로 개정된 지방자